

토양환경정책의 현황 및 미래

토양환경학회·(주)콘테크 대표
김 학 명 부회장

1. 환경산업육성의 필요성

- 환경산업은 고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신중유망 선진국형 산업으로 21세기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환경산업은 기술력 저하, 시장협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영세함
- 국내 환경질 개선과 경제회복 기반조성 및 WTO 체제하의 환경시장 개방과 무역규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의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함

2. 환경산업육성방안의 주요내용

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(G-7)등의 연구성과에 의해 개발된 환경신기술을 실시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환경기술평가 내실화, 신기술 장려제 및 환경기술정보센터 설립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

- 범정부적 “국가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” 수립·추진

<현 황>

- 환경부, 과기부, 산자부 등 부처별로 기술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중복투자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

<추진방향>

-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, 국가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
 - 종합계획에 의거 관계부처와 협의, 소관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

- 환경기술정보지원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

<현 황>

- 기술정보 부족으로 환경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개발로 상품화 이행 및 생산후 매출 부진으로 기술개발 동기 의욕저하

<추진방향>

- 환경관리공단에 환경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수요자 및 개발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
 - 환경기술정보센터 설치·운영
 - 국내외 환경 관련기관간 Network 구축
 - 신기술개발자료집 발간·보급
 - 연 2회 기술전시회 개최 및 환경기술상 수여

○ 신기술장려제 도입

<현 황>

- 현상 적용 실적이 없는 신기술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신기술 사용을 기피
- 도입·적용 실패시 관계자 문책 또는 손해배상 우려

<추진방향>

-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내에 있는 환경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설에 대해 장려금 지급
- 신기술장려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급기준을 설정

○ 환경기술평가제도 활성화 추진

<현 황>

- 환경기술평가는 제도 미비로 입찰시 혜택 부재 및 현장실증 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고비용과 장기간 소요로 이용율이 저조

<추진방향>

-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마련
- 평가비용 및 기간 단축으로 이용편의성 제고
-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개정

○ 신기술보급촉진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

<현 황>

- 대형공사는 일괄입찰(턴키입찰)등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대부분 기타 공사로 시행하여 신기술 적용 및 사업비 절감에 소극적
- 공사실적등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소수 업체에만 입찰자격이 부여되어 기술경쟁이 소홀
-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시설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어 일괄입찰이나 신기술 도입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 차단

<추진방향>

- 턴키 및 기술공모등 기술경쟁 위주의 입찰제도 운영확대
- 대형공사등에서 VE(Value Engineering)를 적용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
- 제한경쟁입찰에서 공사실적 제한규모를 하향조정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기술경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
-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소관시설에 대한 심의가 가능토록 개정